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17
----------	-------

발의연월일 : 2026. 2. 20.

발 의 자 : 정을호·조정식·이정문
차지호·윤종균·김문수
전현희·한민수·박지원
위성곤·이재관·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습비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습비등이 아닌 입학금, 기부금 등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편법적으로 징수하여 사실상 교습비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무력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 뿐만 아니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습비등 외에 금품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벌칙을 마련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해

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5조, 제22조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동일한”을 각각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금액을”을 “금액 또는 교습비등 외의 금품(교습비등 외에 입학금, 기부금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학습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교육감은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 또는 교습비등 외의 금품을 징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제7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 또는 교습비등 외의 금품의 가액이 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③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 또는 교습비등 외의 금품의 가액이 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⑥ ----- ----- -----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u>동일한</u>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1. ----- ----- ----- <u>전부 또는</u> <u>일부가 동일한</u> ----- -----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u>동일한</u>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2. ----- ----- ----- <u>전부 또는 일부가</u> <u>동일한</u> ----- -----
제15조(교습비등) ① ~ ③ (생 략)	제15조(교습비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	④ ----- ----- -----

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
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⑤ · ⑥ (생략)

<신설>

<신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금액
또는 교습비등 외의 금품(교습
비등 외에 입학금, 기부금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학습자에
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을-----.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감은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 또는
교습비등 외의 금품을 징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수
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2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제7항에 따라 과
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
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
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벌칙) ① -----

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 또는 교습비등 외의 금품의 가액이 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 또는 교습비등 외의 금품의 가액이 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3조(과태료) ① -----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u>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u> <u>교습비등을 징수한 자</u> 7의3. ~ 10. (생략) ② (생략)	----- -----. 1. ~ 7. (현행과 같음) <u><삭제></u> 7의3.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